

#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- 186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“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내역”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241호, 2024.11.28.)을 다음과 같이 개정 · 고시합니다.

2025년 11월 18일  
보건복지부장관

## 「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」 전부개정

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에 다음 표에서 정한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를 곱한 것으로 한다.

유형별 분류	점수당 단가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및 종합병원	83.8원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(단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) 및 정신병원	84.2원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	95.6원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	101.1원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	104.3원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	185.1원
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	105.5원
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·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	98.6원

## 부 칙

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국민건강보험법</u> 제45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“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”의 아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로 한다.</p>	<p><u>「국민건강보험법」</u> 제45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는 같은 법 시행령 제 2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에 다음 표에서 정한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를 곱한 것으로 한다.</p>
유형별 분류	점수당 단가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및 종합병원	<u>82.2원</u>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 (단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 시설은 제외) 및 정신병원	<u>82.5원</u>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	<u>94.1원</u>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	<u>99.1원</u>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	<u>102.4원</u>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	<u>174.6원</u>
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	<u>102.1원</u>
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·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	<u>96.0원</u>
유형별 분류	점수당 단가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및 종합병원	<u>83.8원</u>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 (단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 시설은 제외) 및 정신병원	<u>84.2원</u>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	<u>95.6원</u>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	<u>101.1원</u>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	<u>104.3원</u>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	<u>185.1원</u>
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	<u>105.5원</u>
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·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	<u>98.6원</u>